

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 4] <개정 2021. 8. 27.>

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및 조작력 기준(제15조제1항제11호관련)

구 분	기 준
1. 측정자동차의 상태	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운전자 1인이 승차한 상태
2. 제동능력	가. 최고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.2배 이하인 자동차의 각축의 제동력의 합 : 차량총중량의 50퍼센트 이상 나. 최고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 미만이고 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.5배 이하인 자동차의 각축의 제동력의 합 : 차량총중량의 40퍼센트 이상 다. 기타의 자동차 (1) 각축의 제동력의 합 : 차량중량의 50퍼센트 이상 (2) 각축의 제동력 : 각 축하중의 50퍼센트(다만, 뒷축의 경우에는 당해 축하중의 20퍼센트) 이상
3. 좌·우바퀴의 제동력의 차이	해당 축하중의 8퍼센트 이하
4. 제동력의 복원	브레이크페달을 놓을 때에 제동력이 3초 이내에 당해 축하중의 20퍼센트 이하로 감소될 것

주) 관성제동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에 대해서는 위 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